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59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4월 6일, 이승로·김동윤 의원(찬성자 11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승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와 전문대는 20명 정원의 소규모로 편성되어 지대장과 반장만으로 충분한 실정이며, 부장을 두는 경우 대원 수 대비 간부인원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장을 두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조직에 부장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.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, 서울시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중 지역의 용소방대(이하 '지역대'라 함)와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'전문대'라 함)가 그 하부조직을 '반'별 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, 현행 조례가 '부'별 편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그 보다 하위의 '반'별 편제로 축소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(안 제6조)

현행	개정안
제6조(조직)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을 두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	제6조(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대장, 부장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- 현재 의용소방대는 상위법령인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1)에 따라 시·도별로 설치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8조2) 및 별표5 (붙임 1. 참조)에 따라 “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”를 정하고 있음.
- 여기서, 동법 시행규칙(별표5)을 보면 지역대와 전문대를 포함한 모든 의용소방대는 '부'별 편제로 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,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'지역대와 전문대는 부대

1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조직)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부대장·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
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임명한다.
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2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조직)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.
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이 역시 현행과 마찬가지로 법상 문제 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,

- 다만, 현재로서는 소방재난본부가 '부'별 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하부조직을 '부'별 편제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는 본 조례 재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결론적으로, 향후 상황이 바뀌어 '부'별 편제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조례가 이를 미리 예측하여 범위를 확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, 본 개정안과 같이 현행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부대장”을 “부대장, 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조직)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· 부대장· 부장·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.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<u>부대장</u> 을 두지 아니한다.	제6조(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대장, 부장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